

공기 질 등의 유지·관리기준(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)

1. 유지기준

오염물질 항목	기준(이하)	적용 시설	비 고
가. 미세먼지	35 $\mu\text{g}/\text{m}^3$	교사 및 급식시설	직경 2.5 μm 이하 먼지
	75 $\mu\text{g}/\text{m}^3$	교사 및 급식시설	직경 10 μm 이하 먼지
	150 $\mu\text{g}/\text{m}^3$	체육관 및 강당	직경 10 μm 이하 먼지
나. 이산화탄소	1,000ppm	교사 및 급식시설	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,500ppm이하
다. 폼알데하이드	80 $\mu\text{g}/\text{m}^3$	교사,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) 및 급식시설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라. 총부유세균	800CFU/ m^3	교사 및 급식시설	
마. 낙하세균	10CFU/실	보건실 및 급식시설	
바. 일산화탄소	10ppm	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	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
사. 이산화질소	0.05ppm	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	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
아. 라돈	148Bq/ m^3	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), 1층 및 지하의 교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자. 총휘발성유기화합물	400 $\mu\text{g}/\text{m}^3$	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차. 석면	0.01개/cc	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	
카. 오존	0.06ppm	교무실 및 행정실	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로

			한정
타. 진드기	100마리/m ²	보건실	
파. 벤젠	30 μ g/m ³	건축 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하. 톨루엔	1,000 μ g/m ³	건축 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거. 에틸벤젠	360 μ g/m ³	건축 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너. 자일렌	700 μ g/m ³	건축 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더. 스티렌	300 μ g/m ³	건축 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사	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2. 관리기준

대상 시설	중 점 관 리 기 준
가. 신축 학교	1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)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) 책상·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 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)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 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
나.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	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다.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 교	1)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 도록 중점 관리할 것 2)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「실 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 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) 책상·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 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
라.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	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

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	리할 것
마. 개별 난방(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) 교실 및 도 로변 교실	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 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바. 급식시설	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 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적으로 관리할 것
사. 보건실	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